

# **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**

## **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**

2015. 9. 2.  
행정건설위원회

### **1. 심사경과**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5년 6월 2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5년 6월 5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(2015년 6월 24일)  
상정, 심사, 보류  
제198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15년 9월 2일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# **2. 제안설명의 요지**

#### **■ 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과장 이준범**

#### **가. 제안이유**

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관광 관련 업무추진의 전문성을 위하여 관광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업무 범위를 규정하며, 관광진흥센터와 종합관광안내소 위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

#### **나. 주요내용**

- 1)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 신설(안 제5조제2항 제2호)
- 2) 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 관련 단체,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 등에게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6조)

-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
  -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
  -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에 따른 재정적 지원
  - 그 밖에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
- 3) 관광 관련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업무 범위를 규정(안 제8조 ~ 제9조)
- 관광진흥센터의 업무 범위
    -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통계조사 · 분석 · 연구 ·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
    - 관광안내체계 구축 및 유지 · 관리에 관한 사항
    - 관광브랜드상품 및 수익형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
    - 구에서 설치한 각종 관광안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
- 4) 관광진흥센터 및 종합관광안내소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 신설(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안 제22조)
- 위탁기간 : 3년 이내로 하되,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
  - 수탁자 선정방법 : 공개모집 원칙,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
  -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· 운영
    - 위원장 1명(부구청장)을 포함하여 총 9명 이내로 구성
    - 당연직 위원 2명(소관국장 및 과장),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소속 구의원 2명, 관광 분야 전문가 4명
  -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평가를 실시하여 재협약 적정여부를 결정

### **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김은모)**

- 동(同) 조례안은 마포구 관광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찾아오는 마포구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마포구의 특색 있는 관광기념품 개발 및 외국인관광객 투어 프로그램 운영 등 경험이 풍부한 민간부문과의 협력사업 증가에 따른 구체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-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경우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로 제

한됨으로써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출 지원근거를 신설함.

※ 개정 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의 단서규정(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출에 대한 지원근거)이 2016 회계연도부터 적용됨.

- 마포 관광 진흥 전담조직인 관광 진흥 센터 설립예정에 따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.
- 관광 진흥센터 및 종합관광안내소 민간위탁 규정을 명확히 하고 민간위탁 대상 선정 시 절차의 공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- 주요내용으로는

가. 안 제5조제2항제2호에서는 구청장이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.

나. 안 제6조에서는 마포구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 민간부문 등 지원근거 신설함.

- 지원대상 : 관광 관련 단체,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 등
- 지원내용
  - 1)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
  - 2)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및 추진 실적에 따른 재정적 지원
  - 3) 그 밖에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

- 지원방법 :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방법 등에 대한 규정 신설

※ 관광(의료관광 포함) 관련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 7개 자치구 중 5개 자치구 가 민간부문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.

다. 안 제8조 ~ 안 제9조에서는 관광 진흥센터 설치 및 업무 범위와 규정을 신설함

- 1) 마포구 지역 관광 진흥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광 진흥센터 설치에 관한 근거 마련
- 2) 센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(합정동) 마포한강푸르지오 상가 1층에 설치하되,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

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음.

### 3)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센터의 업무 범위 규정

-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통계조사, 분석, 연구,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
- 관광객 유치, 관광활성화 및 관광 홍보, 마케팅에 관한 사항
- 관광안내체계 구축 및 유지·관리에 관한 사항
- 관광브랜드상품 및 수익형 관광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
- 각종 기부채납 및 공공기여 시설물을 활용한 관광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
- 구에서 설치한 각종 관광안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라. 안 제10조 ~ 안 제17조, 안 제22조에서는 마포구 관광 진흥센터 및 종합관광 안내소 업무위탁 기준을 구체화함.

1) 위탁대상 :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

2) 위탁기간 : 3년 이내로 하되,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

3) 수탁자 선정기준

- 센터 및 안내소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
- 위탁사무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 실적
-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

4) 수탁자 선정방법 : 공개모집 원칙,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

5)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

- 구성인원 : 위원장 1명(부구청장)을 포함하여 총 9명 이내
- 구성내용
  - 당연직 위원 2명 : 관광업무 소관국장 및 과장
  - 제25조제3항에 따른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소속 구의원 2명
  -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관광 분야 전문가 4명

6) 협약체결

- 협약내용 : 위탁기간, 위탁사무 및 그 내용, 위탁의 취소사항 등
  - 재 협 약 :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 결과 평가 후 수탁자 적정여부 판단
- 7) 지도·감독 : 수탁자의 보고의무 및 소속 공무원의 출입·검사권 규정
- 8) 그 밖에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」에 따른 법률용어의 순화하고 일부 조문상의 표현을 변경하였음.
-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마포관광기념품 개발 등 민간부분 과의 관광 협력사업 필요성 증가, 관광사업 관련 추진 시 민간 지원근거 및 관광 업무추진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, 관광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와 관광진흥센터 및 종합관광안내소 민간위탁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2015. 6. 24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97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1억 원과 재계약 시 구의회 동의에 대한 조례가 결정 된 이후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」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.
- 그간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회기 때 보류 중인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문화관광과에 매년 업무계획 보고 시 연례적으로 보고하는 단기계획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마포 관광 미래에 대한 계획과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광테마 등을 포함하는 중·장기적 계획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관련부서에 요구하여 2015. 7. 10. 행정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「마포관광발전 기본계획(4개년 : 2015~2018)」에 대한 설명보고회를 가진 바 있음.
- 또한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2015. 7. 10. 마포구와 MBC가 공동 추진하는 상암동 「DMC 문화축제계획」 설명보고회 및 MBC 방송국 등 관광산업

현장을 직접 견학하면서 마포구 관광산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 주소를 몸소 체험한 바 있고, 문화관광과에서는 「마포 관광발전 기본계획」의 하나인 '젊음과 낭만의 문화예술도시, 마포'로 계획 실천을 위해 2015. 9. 3. 서교 예술실험센터에서 마포구 관광업계 관련인사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마포관광 조찬 포럼 및 간담회를 개최(7회)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음.

- 따라서, 마포관광산업의 활성화는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 마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포기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관광산업으로써 이제는 민·관이 구분될 수 없으며, 이번 조례에 마포구 관내에 관광진흥센터 및 종합안내소 설치·운영과 위탁관련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민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재 마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관련부서에서도 동 조례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한다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번 개정을 계기로 향후 마포 관광산업 활성화 계획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관광 진흥법」 제48조, 제76조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에 저촉됨이 없고, 2015. 4. 23. ~ 5. 13. 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절차상에도 문제점은 없으나, 검토결과 수정 할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중 "안내소"를 "센터"로 하고, 안 제13조제1항 중 "구성한다"를 "구성하고, 관광업무의 특성상 민간인의 창조성을 중요시 하여,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."로 하고, 안 제13조제2항 중 "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"를 삭제하며, 부칙 제2조 중 "제11조제2항"을 "제10조제2항"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